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46

발의연월일: 2023. 5. 18.

발 의 자:하태경・황보승희・정운천

정우택・金炳旭・김성원

배준영 • 이종성 • 조해진

강민국 · 김석기 · 엄태영

김학용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 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 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제3항 삭제 등).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제1호 중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회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같은호에 따른 대주주"를 "대주주"로,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 연도의 산정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 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사인의	선임)	1.2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u>된다.</u>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
			<u>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u>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 ⑥ (생 략)

-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 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 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 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 2. 3. (생략)

(8·9) (생 략)

감사인 지정 등)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 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 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

$\underline{4} \sim \underline{7}$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8</u>
,
1. <u>제11조제1항</u>

- 2. · 3. (현행과 같음)
- (9·10)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현행과 같 음)

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은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회사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 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 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삭 제>

-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 지 아니한 회사
-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 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회사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 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 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 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 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 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 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7) (생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④ <u>제1항</u>
⑤ (현행과 같음)
⑥ <u>체1항</u>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 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 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u>같</u>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 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6조, <u>제10조제4항부터 제6</u> <u>항까지</u>, 제12조제2항, 제22조 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4
<u>대통령령으로</u>
<u>대주주</u>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
5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
한 조치 등)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제5항부터 제7</u>
<u>항까지</u>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u>제11조제1</u> 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4. • 5. (생략)

② ~ ⑦ (생 략)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 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 설>

5. ~ 8. (생 략)

3 <u>제11조제1</u>
<u> </u>
4.·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
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
한 경우
5. ~ 8. (현행과 같음)